4

# 피혁 코팅공장 생산관리자에서 발생한 폐암

성별	남	나이	50세	직종	생산관리자	직업관련성	낮음
----	---	----	-----	----	-------	-------	----

## 1 개 요

신  $\circ$   $\circ$  (남, 53세)은 1998년 3월 피혁가공 업체에 입사하여 피혁의 입고부터 출고까지 전 공정을 생산관리 하는 업무에 종사하던 중 2003년 10월 1일 비소세포 폐암으로 진단받고 치료중 요양신청하였다.

# 2 직업력 및 작업화경

신 ○ ○ 은 입사부터 발병까지 약 5년 6개월 간 피혁가공 과정 중 코팅공정을 담당하는 업체에서 전 공정 생산관리를 하였다. 작업 중 노출될 수 있는 유해인자는 가죽에서 발생하는 일반 분진과 코팅에 사용되는 약품인데 약품은 배합 및 자동 스프레이코팅 작업시 노출될 수 있으나 배합은 담당자가 별도로 있어 신 ○ ○ 이 노출되었을 가능성은 적다. 약품의 성분은 물질안전보건자료에 의하면 발암성이 없다. 과거 작업환경측정결과에 의하면 사업장에서 측정되는 유해인자는 아세톤과 톨루엔이었고 노출기준의 1% 미만이었다. 과거 직업력은 약 10여년 간 쇠를 깍는 작업에 종사하였다고하나 노출된 유해인자나 작업내용은 불확실하고 사업장의 폐쇄로 추적이 불가능하다.

#### 3 의학적 소견 및 개인력

신 ㅇ ㅇ 은 약 10년 전부터 천식으로 치료받고 있으며 폐암 진단 수개월 전부터 체

중이 감소하여 대학병원으로 전원되어 편평상피세포암으로 진단받았다. 흡연력은 30 년갑·년으로 되어있다.

# 4 고 찰

신ㅇㅇ의 폐암의 업무관련성을 평가하기 위해서는 작업 중 폐암을 일으키는 유해 인자에 노출되었는가와 노출되었다면 노출량이 폐암을 일으킬 정도로 충분한가를 평 가하여야 한다. 신 ㅇ ㅇ은 피혁 가공업체인 현 사업장에서 폐암을 일으킬만한 유해인 자에 노출되지 않았다. 또, 근무기간이 폐암으로 인한 증상을 인지한 시점까지 약 5 년에 불과하여 유해물질 노출로 인하여 폐암이 발병하였다고 하기에는 불충분하다. 신 o o 폐암의 원인은 근로자가 흡연을 최소 20갑·년 이상하였으므로 직업적 노출보 다는 흡연에 의한 가능성이 더 크다고 판단된다.

# 5 결 론

이상의 조사결과 신 이 이의 비소세포 폐암은

- ① 신ㅇㅇ이 피혁 원단 및 약품 분진 등에 노출된 것은 인정되나 이들 물질에 폐암 을 일으키는 것으로 알려진 유해인자는 포함되지 않았고, 노출기간도 5년으로 짧으며,
- ② 신 o o o 폐암 발병의 가장 중요한 원인인 흡연력이 20갑·년 이상이므로, 신 이 이의 폐암은 업무상질병보다는 흡연에 의한 가능성이 높다고 판단된다.